

대법원 2022. 9. 29 선고 2022다259883 판결 [임대보증금반환청구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2. 9. 29 선고 2022다259883 판결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7. 19 선고 2022나40762 판결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1. 11 선고 2020가소409100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 A

피고, 상고인 B

판결선고 2022. 9. 29.

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7. 19. 선고 2022나40762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이흥구, 대법관 안철상, 주 심 대법관 노정희